

경제 규제혁신 TF
23-6-1
(공개)

제4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2023. 4. 19.

관계부처합동

순서

I. 추진 경과	1
II. 주요 특징	2
III.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과제	3
IV. 향후 계획	11
<참고 1> 과제별 추진 계획	12
<참고 2> 과제별 부처 담당자	14
<참고 3> 공공기관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목록	16

I. 추진 경과

◇ 그간 5차례 경제 규제혁신 TF 등을 통해 119개 규제개선과제와 6건의 테마별 규제혁신 방안 발표 ⇨ 7.7조원 민간투자 지원

□ 민간 주도의 성과지향적 협의체인 「경제 규제혁신 TF」 구성*·운영(6.23~)하여 규제혁신 추진

* 경제부총리, 민간 전문가 공동팀장 / 정부위원(11명)보다 많은 민간위원(12명)

□ 지난 '22.7.28, 제1차 경제 규제혁신 TF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5차례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 기업·경제단체·협회 등으로부터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119개를 개선하고 이행 점검 중

○ 이와 함께 중소·벤처, 외환, 조달 등 국민 관심도가 높은 6개 분야의 규제혁신 방안 발표

<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현황 >

회차	일자	안건	상정부처
1차	'22.7.28	1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기재부
2차	'22.9.5	2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기재부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	기재부·환경부
3차	'22.10.17	3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기재부
		제1차 중소·벤처분야 규제개선 방안	중기부
		철도분야 규제개선 방안	국토부
4차	'23.2.10	외환제도 개편 방안	기재부
		제1차 조달현장 규제혁신 추진방안	조달청
		건설산업 현장 애로 개선방안	국토부
5차*	'23.3.2	기업투자·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기재부

*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국무총리 주재) 안건 상정

□ 금번 경제 규제혁신 방안에서 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 등 총 55개 개선과제 발굴

II. 주요 특징

◇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 등 규제혁신 추진

1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 민간 투자 6천억원 지원

- 규제,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투자가 지체되거나 불확실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애로 해소
- 직접적 규제 완화 외에도 글로벌 제약기업의 신규 공장 건설 관련하여 규제 걸림돌이 없는 대안 부지를 제안하고,
 - 미활용 국유지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3건의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 애로 해소 실시

2 공공기관을 통해 발굴한 규제에 대한 개선

- 공공기관의 자체 규제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이 발굴한 정부 규제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선**
 - * 자체개선 가능과제는 공공기관 내 기업성장응답센터 등을 통해 추진 중
 - ** 2023년 경제정책방향(22.12.21)에서 각 부처가 소관 공공기관을 통해 행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계획 발표
 - '22.11~'23.2월간 총 57개 공공기관으로부터 규제개선 과제를 115개 발굴 ⇨ 41개 과제* 개선
 - * 주요 과제 7건 외 전체 과제는 '공공기관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목록(참고3)' 참고
 - 잔여 74개는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신속한 개선 추진

3 규제 체감도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 규제혁신 노력 지속

- 주요 경제단체, 협·단체, 기업 간담회 등 민간·시장과 소통하며 현장 중심의 규제개선 과제 발굴·개선 노력 지속

Ⅲ. 분야별 규제혁신 주요 과제

- ◇ ①기업의 현장애로 해소, ②신산업·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 ③행정절차 부담 완화 등 총 21개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

1 기업의 현장애로 규제 해소

① 투자프로젝트, 규제 검토 등을 거쳐 대안 공장 부지 제시 [현장대기투자프로젝트]

- (현행) 글로벌 제약기업 희망부지가 배출물질이 적은 도시형 공장만 설립 가능한 연구용지로 지정되어 있어 대규모 공장설립이 곤란
- (개선) 기업투자 프로젝트와 관련 규제를 검토하여 입주 가능한 대안 부지를 탐색하여 제시함으로 신규 투자 유치

[조치사항] '23.2분기까지 기업 측에 대안 부지 제시

② 미활용 국유지 신속한 임대 추진 [현장대기투자프로젝트]

- (현행) 대산항 서측 투기장 부지(국유지*)에 대한 민간 수요가 있음에도 활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임대 등 절차 미착수
- * (면적) 4.8만평, (지목) 잡종지('16.1.27일 지정), (지역지구) 일반공업지역 (소유자) 국가(관리청: 해양수산부 대산청)
- ** 통상 준설토 투기 완료 후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 등 계획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며, '23.8월 투기 완료 예정
- (개선) 유휴 항만부지가 민간 투자에 조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활용계획 수립 등 신속한 임대절차* 추진

* 배후부지 활용방안 용역('23.5월~) → 기업 수요조사 → 활용계획 확정('23.8월) 계획

[조치사항] '23.3분기까지 대산항 서측 투기장 임대 공모

③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신속 심의 (현장대기투자프로젝트)

- (현행) 영덕군 추진 해상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해당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목적 변경*(관광사업시설용지 추가) 필요
 - * 현재는 "그 밖의 시설용지(대게축제장 및 소공원)" 목적
- (개선)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해수부 차관 주재)를 신속히 개최하여 공유수면매립지 매립목적 변경여부 심의*
 - * 준공된 매립지는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산업 발전·주변여건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 변경 가능

[조치사항] '23.2분기까지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④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대규모 사업장*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과 「집행관리 및 예산편성지침(환경부)」상 지원대상이 불일치하여 관련 기업이 보조금 신청에 애로
 - * 산업단지 내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입주한 경우로 1개 사업장 면적이 전체의 75% 이상이거나 1개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전체의 80% 이상인 경우
- (개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과 「집행관리 및 예산편성지침」상 지원대상 불일치 해소*
 - * 산업입지개발통합지침: (현행) 대규모 사업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 (개선) 좌동 집행관리및예산편성지침: (현행) 지원대상에서 제외 → (개선)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조치사항] '24.1분기까지 관련 지침 개정(지침 개정 전까지 해석을 통해 불일치 해소)

⑤ 문화재 주변 개발시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 실시

- (현행)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 추진시 국가유산과 관련된 복잡하고 어려운 규제로 사업 추진에 애로
- (개선) 국가유산 주변 대규모 개발계획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 컨설팅* 실시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상 규제(예: 문화재가 매장·분포되어 있는지 확인을 위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적용 여부,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대상 여부 등

[조치사항] '23.2분기부터 사전컨설팅 실시

2

신산업·신기술 도입 등을 위한 규제개선

1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건조 및 운항기준 마련

- (현행) 해외로부터 수소 도입 확대가 예상*되나, 선박 안전 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운반선 관련 투자 지연
 - * (수소경제활성화로드맵, '19.1월) 수전해, 해외생산·수입 등 그린수소 확대와 연계하여 수소생산량을 13만톤('18년) → 526만톤('40년)으로 확대
- 친환경 연료인 수소를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액화수소 추진선 건조도 어려움
- (개선) R&D*, 실증사업 및 국제해사기구(IMO) 논의 사항** 등을 감안하여 조속히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안전기준 마련
 - * 국가연구개발사업(수소선박 안전기준 개발사업) 진행 중('20~'24년)
 - ** 국제해사기구(IMO)는 화물·컨테이너 운송 전문위원회(CCC)에서 수소연료 추진 선박 기술기준 검토 중이며, '25년 하반기 잠정기준 마련 예상

[조치사항] '25.4분기까지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의 수소선박 안전기준 마련

2 신소재·형태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 (현행) 고풍간강* 소재는 액화수소 저장탱크 재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액화수소 저장탱크 형태도 일반적인 모양(실린더 또는 구)만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다른 형태로 제작 곤란
 - * 망간이 11~14% 함유된 합금강으로 내충격, 내마모성이 우수하고 기존 니켈합금강, 스테인레스강 대비 성능 및 경제성이 우수하나, 액화수소 온도(-253도)에서 안전성 여부가 미확인
- (개선) 액화수소 운반선에 장착하는 액화수소 저장탱크를 새로운 소재·형태(예: 각형)로 제작이 가능하도록 안전기준 마련*
 - * 국산화 모델 개발(R&D, '21.5월~'24.4월) 및 실증사업('24년 하반기) 추진 예정

[조치사항] '24.4분기까지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안전기준 마련

③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한국중부발전(주)]

- * 태양광이나 풍력 등 불규칙적으로 생산되는 신재생에너지를 미리 저장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Energy Storage System)
- (현행) ESS는 오염물질 배출이 크지 않음에도 일반발전소로 분류되어 10,000kW 이상 규모 설치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 (개선) ESS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를 태양력·풍력·연료전지 발전소와 같은 수준(100,000kW)으로 완화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④ 국민 수요반응(DR, Demand Response)* 참여 조건 완화 [한국전력거래소]

- * 개별 입주세대가 가정·상가 등에서 아낀 전기를 판매해 수익을 보상받는 제도
 - 특정요건 발생시(수급비상, 미세먼지 등) 국민들이 전력소비를 감축(급속충전기 충전 조정 등)하고, DR 참여 전·후 전력사용데이터를 비교하여 전력사용절감분 보상
- (현행) 고용량 급속충전기(예: 가정용 전기차 충전기) 보급이 확산되었으나, 국민 DR 참여자격은 70kW 이하 저용량 충전기로 제한
- (개선) 국민 DR 참여자격을 70kW → 200kW로 확대

[조치사항] '22.12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기조치)

⑤ 클라우드 펀딩 방식 등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공모문전사) 설립 허용

- (현행) 공모문전사가 업무를 위탁*하여야 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한 세부 등록요건이 없어 사업관리자 등록 및 공모문전사 설립 불가
 - * 문화상품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 및 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등
- (개선) 클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모문전사가 설립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자에 대한 인력·설비·자본금 등 세부 등록요건 마련

[조치사항] '23.3분기까지 법률 개정안 국회 제출 등

6 국유림 내 풍력발전용 임대기준 완화

- (현행) 사용계획이 미확정된 국유림은 풍력발전용 임대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은 임대 불가
- (개선) 선도 산림경영단지*로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더라도 국유림의 경영 관리에 지장이 없고 재해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풍력발전용 임대 허용

* 목재의 안정적 수요·공급 우량 목재 증식을 위해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경제림육성단지) 중 경영여건이 우수한 단지(산림청장이 선정)

**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에 그동안 산림사업 등에 투입된 비용을 환수하는 조건으로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에서 그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치사항] '23.2분기까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7 상업용 CO₂ 세탁기 안전기준 개선

- (현행) 상가 내 상업용 세탁소에 CO₂ 세탁기*를 설치할 경우 안전관리자 3인 선임 의무 등이 적용되어 사실상 설치 곤란
- * 액체 CO₂를 세탁 용제로 활용하여 세탁하는 것으로써 사용한 CO₂는 재생 과정을 통해 재활용 / 물과 석유계 용제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제품
 - 미국·유럽 등에서 드라이클리닝 세탁의 대안으로 CO₂ 세탁기*를 개발 및 상용화 중이며('02년~), 국내에서도 해당 제품을 개발 중
- (개선) 안전성이 확보된 CO₂ 세탁기를 상업용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실증('22.1월~'23.12월)을 거쳐 고압가스 안전관리 규제 합리화

[조치사항] '24.4분기까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3

행정절차 부담 완화 등

1 산지 전용*시 거쳐야 하는 재해위험 관련 행정절차 부담 완화

- * 산지를 조림, 임산물 채취재배 등의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위해 형질을 변경하는 것
- (현행) 5,000㎡ 이상 산지전용 시 유사한 재해영향평가(자연재해 대책법)와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산지관리법)가 이중규제로 작용
- * 660~5,000㎡ 산지를 전용할 경우는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만 제출(재해영향평가 미적용)
- (개선) 5,000㎡ 이상 산지 전용 시 재해영향평가를 받았으면 재해위험성 검토서 제출을 생략
- * 재해영향평가는 산림재해 위험성 검토 이외에도 사면·토사·해안 등 위험성을 포괄적으로 검토

산지 전용 면적	현행		개선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성 검토서	재해영향평가	재해위험성 검토서
660㎡ ~ 5천㎡ 미만	미제출	제출	(좌 동)	
5천㎡ 이상	제출	제출	제출	생략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도면 제출 범위 합리화 [안전보건공단]

- *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 자료, 위험성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제출하고, 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심사
- (현행) 반도체 산업은 영업기밀상 도면제출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모든 설비에 대해 도면 제출 의무
- (개선) 반도체 사업장이 사전에 동일공정 내 대표설비*를 선정하여 도면을 작성·제출하면 이후 추가 설비(공단이 동일·동종설비로 승인한 설비)에 대해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도면 제출을 면제
- * 동일 모델 중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종류가 가장 많은 설비

[조치사항] '23.1월 공정안전관리제도 관련 업무처리지침 시달(기조치)

③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KCS) 면제대상 확대 (안전보건공단)

* 근로자 안전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위험기계·기구의 안전성과 제조자의 기술능력·생산체계를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하는 제도

- (현행) 안전인증 제도는 수출 목적으로 제조하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면제 중이나, 수출 목적으로 수입하는 위험기계·기구*에는 적용

* 위험기계·기구를 수입하여 조립·가공 후 국내 사용이 아닌 수출을 하는 경우에도 수입한 위험기계·기구에 대해 안전인증 실시

- (개선) 안전인증 면제를 수출 목적의 “수입품”에도 적용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

④ 업무성과가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평가 부담 완화 (안전보건공단)

* 산업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 안전인증·검사 등을 실시하는 민간기관

- (현행) 1년 주기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업무성과 평가를 받는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해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매년 평가 실시
→ 성과 제고 인센티브가 미흡하고, 평가부담 요인으로 작용

- (개선) 평가주기가 1년인 민간재해예방기관이 우수한 업무성과 평가(S등급)를 2년 연속 받은 경우, 익년도 평가를 면제

[조치사항] '23.2분기까지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⑤ 공공조달 계약시 제안서 제출 방법에 직접제출 포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현행)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서 제안서 제출*의 예외적 방법에 직접제출(방문제출)을 명시하지 않아 직접제출 제한

* (원칙) 전자조달시스템 또는 발주기관의 정보처리장치 / (예외) 전자우편·우편
- 조달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제출방법에 직접제출은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실무 판단('20년)

- (개선) 제안서 제출의 예외적인 방법에 직접제출도 허용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⑥ 해양 개발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개선 [여수광양항만공사]

* 해양공간을 이용·개발할 경우 사전에 입지 적절성 등에 대해 해수부와 협의 (해양공간적합성협의)

- (현행)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완료한 해양 개발계획·구역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적합성협의 재이행
- (개선) 경미한 계획 변경(매립 위치 변경 등)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경미한 변경시 약식 협의* 시행

* (예) (現) 전문기관을 통해 자문위 검토 후 결정 → (改) 해수부가 자체 결정

[조치사항] 국회 계류 중인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후 '24.1분기까지 해양공간계획법 시행령 개정

⑦ 경미한 문화재 수리시 설계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 (현행) 문화재 수리는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 승인 대상(설계 승인)
- (개선)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문화재 수리*는 설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됨을 명확히 규정(※입법예고 완료, '23.2.27)

* 초가이영잇기, 예초, 방제, 창호지바르기, 기존시설물 보수, 잡목·고사목제거 등

[조치사항] '23.3분기까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⑧ 문화재 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 (현행) 문화재 매매업 허가를 받은 자가 변경신고(상호, 주소지, 대표자, 임원)시 변경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등을 함께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함
- (개선) 변경신고시 사업자등록증 면제(행정정보 공동이용 '본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아 민원처리기관에서 사업자등록증 열람)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9 전승공예품* 인증절차 개선

*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
(예: 매듭·자수 등 섬유공예품, 나전 등 목칠공예품)

- (현행) 전승공예품 인증을 받기 위한 소요기간이 길고(180일), 인증항목인 유해성 검사(문화재청)가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안정성 검사와 중복되는 측면
- (개선) 인증 소요기간을 단축(180→150일)하고, 문체부 안정성 검사 통과 공예품은 유해성 검사 면제

[조치사항] '23.4분기까지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IV. 향후 계획

-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하여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 지속
 - ☞ 5월 중 7차 경제 규제혁신 TF 개최 추진
 - 민간 건의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 추진
- 지속적 과제 발굴 +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 +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되었는지, 추가 애로 사항은 없는지 점검
 - ☞ 규제개선이 현장에서 체감되도록 밀착 지원하는 등 규제개선 사이클 관리

참고 1

과제별 추진 계획

번호	정책과제	일정	부처
1-1	투자프로젝트, 규제 검토 등을 거쳐 대안 공장 부지 제시 (기업측에 대안 부지 제시)	'23.2분기	산업부
1-2	미활용 국유지 신속한 임대 추진 (대산항 서측 투기장 임대 공모)	'23.3분기	해수부
1-3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신속 심의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안전 상정)	'23.2분기	해수부
1-4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 (공공처리폐수시설 '24년도 집행관리 및 '25년도 예산편성지침 수립시 반영)	'24.1분기	환경부
1-5	문화재 주변 개발시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컨설팅 실시 (사전컨설팅 실시)	'23.2분기	문화재청
2-1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건조 및 운항기준 마련 (선박안전법 등 관계 법령의 수소선박 안전 잠정기준 마련)	'25.4분기	해수부
2-2	신소재·형태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액화수소 저장탱크 실증 관련 안전기준 마련)	'24.4분기	산업부
2-3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23.4분기	환경부
2-4	국민 DR 참여 조건 완화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 완료)	기초치	산업부
2-5	클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모문전사 설립 허용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시행령 개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 국회 제출('23.3분기)	'24.4분기	문체부
2-6	국유림 내 풍력발전용 임대기준 완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23.2분기	산림청
2-7	상업용 CO ₂ 세탁기 안전기준 개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4.4분기	산업부

3-1	산지 전용시 거쳐야 하는 재해위험 관련 행정절차 부담 완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3.4분기	산림청
3-2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도면 제출 범위 합리화	기초치	고용부
3-3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대상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제출)	'23.4분기	고용부
3-4	업무성과가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평가 부담 완화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	'23.2분기	고용부
3-5	공공조달 계약시 제안서 제출 방법에 직접제출 포함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	'23.4분기	기재부
3-6	해양 개발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개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24.1분기	해수부
3-7	경미한 문화재 수리시 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제출)	'23.3분기	문화재청
3-8	문화재 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23.4분기	문화재청
3-9	전승공예품 인증절차 개선 (전승공예품 인증의 기준 및 심사 절차, 표시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	'23.4분기	문화재청

참고 2

과제별 부처 담당자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1-1	투자프로젝트, 규제 검토 등을 거쳐 대안 공장 부지 제시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남명우 과장 044-203-4080	전종형 사무관 044-203-4089
1-2	미활용 국유지 신속한 임대 추진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주상호 과장 044-200-5960	윤성환 사무관 044-200-6077
1-3	해상케이블카 설치 관련, 중앙연안관리심의위원회 신속 심의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김인경 과장 044-200-5260	이경환 사무관 044-200-5268
1-4	공공처리폐수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규정 정비	환경부 수질수생태과	박판규 과장 044-201-7060	박상동 사무관 044-201-7068
1-5	문화재 주변 개발시 문화재 영향진단 사전컨설팅 실시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김명준 과장 042-481-4830	이희영 사무관 042-481-4835
2-1	액화수소 운반선 및 추진선 건조 및 운항기준 마련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기술과	이창용 과장 044-200-5830	김세준 사무관 044-200-5838
2-2	신소재·형태 액화수소 저장탱크 제작이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박경민 사무관 044-203-3985
2-3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의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차은철 과장 044-201-7270	이진희 사무관 044-201-7271
2-4	국민 DR 참여 조건 완화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	강경택 과장 044-203-3910	정지용 주무관 044-203-3916
2-5	클라우드 펀딩 방식의 공모문전사 설립 허용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	윤양수 과장 044-203-2411	채창렬 사무관 044-203-2425
2-6	국유림 내 풍력발전용 임대기준 완화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송준호 과장 042-481-4090	조성국 사무관 042-481-4098
2-7	상업용 CO ₂ 세탁기 안전기준 개선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황윤길 과장 044-203-3980	배재형 사무관 044-203-3983

과제명		부처명	담당과장	담 당
3-1	산지 전용시 거쳐야 하는 재해위험 관련 행정절차 부담 완화	산림청 산지정책과	도재영 과장 042-481-4140	박승규 서기관 042-481-4123
3-2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도면 제출 범위 합리화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	심우섭 과장 044-202-8965	신백우 사무관 044-202-8969
3-3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는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대상 확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박원아 과장 044-202-8850	김영남 사무관 044-202-8853
3-4	업무성과가 우수한 민간재해예방기관에 대한 안전보건공단의 평가 부담 완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	박원아 과장 044-202-8850	김철수 사무관 044-202-8852
3-5	공공조달 계약시 제안서 제출 방법에 직접제출 포함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류중재 과장 044-215-5210	강석훈 사무관 044-215-5214
3-6	해양 개발계획구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협의절차 개선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김인경 과장 044-200-5260	이정훈 사무관 044-200-5263
3-7	경미한 문화재 수리시 승인 대상이 아님을 명확화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곽수철 과장 042-481-4860	이승재 사무관 042-481-4864
3-8	문화재 매매업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이재원 과장 042-481-4933	김흥년 사무관 042-481-4923
3-9	전승공예품 인증절차 개선	국립무형유산원 전승지원과	권오현 과장 063-280-1440	장해숙 사무관 063-280-1531

참고 3

공공기관 통해 발굴한 규제개선 과제 목록

연번	과 제	공공기관
1	고용보험에 대한 보수총액신고 안내 등 전자고지 확대	근로복지공단
2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한 업무상질병판정서·심사결정서 공개	
3	근로복지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간 건강진단결과표 전산 자동 연계	
4	근로복지공단병원 고객용 모바일 솔루션 구축	
5	산재 근로자 입증 부담 경감을 위한 마이데이터 체계 구축	
6	산재 승인 후 요양·보험급여 전자고지 서비스 구축	
7	산재 요양급여의 통합 전산심사시스템 구축	
8	산재보험법상 법령위반 사고의 고의·중과실 판단기준 마련	
9	산재보험의료기관의 요양과 복귀지원의료기관의 직업능력강화훈련 병행 허용	
10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모바일 신고 서비스 구축	
11	특고 고용·산재보험 신고서식 단일화	
12	일터혁신 컨설팅 신청 방식 간소화	노사발전재단
13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인증요건 판단 관리체계 개선	사회적기업진흥원
14	취약계층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절차 간소화	
15	과로사 고위험군 심층 건강진단 모바일 신청 허용	안전보건공단
16	기초안전보건교육 모바일 이수증 발급시스템 구축	
17	민간위탁사업 참여제한 조건 완화	
18	민간재해예방기관 평가주기 개선	
19	반도체 장비 공정안전보고서 심사시 제출도면 범위 조정	
20	부적합 통보받은 안전체험교육의 부적합 사유 해소시 즉시 재신청 허용	
21	수입목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인증 면제	
22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 평가기준 합리화	
23	옥외근로자 마스크 지원 등 업무 위탁기관 제한 완화	
24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	
25	정전기 재해 예방을 위한 접지저항 고시 기준 합리화	
26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시 출석자 범위 명확화	
27	수입자의 MSDS 영업비밀 비공개승인 대체자료 연계 허용	
28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재협의 기준 마련 및 절차 간소화	여수광양항만공사
29	중수도 이용시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면제 허용	인천국제공항공사
30	폐쇄된 취수지역인 경우 공장설립 허가(기허용)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1	도시가스사업법상 물량교환 시행에 따른 시설이용조건 완화	한국가스공사
32	외국인 고용허가제 관련 민원 신청시 증빙서류 간소화	한국고용정보원
33	사업주훈련의 훈련과정 인정·반려 등 업무처리 기간 기준 개선	한국산업인력공단
34	방류종자인증제 사업 대상종을 훈령에서 정하도록 개정	한국수산자원공단
35	도급승인 대상 작업 관련 판단기준 개선(기허용)	한국수자원공사
36	개인위치정보처리방침 및 이용약관의 중복사항 통합·개선	한국인터넷진흥원
37	국민 DR 참여조건(70kW→ 200kW 이하) 완화	한국전력거래소
38	중소형 DR에 한하여 통합자원 구성 허용	
39	발전사업용 전기저장장치 환경영향평가 대상 합리화	한국중부발전
40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의 직접제출 허용	한국직업능력연구원
41	환경신기술 협약제도 제출서류 간소화	한국환경산업기술원